

의안번호	2217823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6. 4. 27.
추 계 번호	26B1764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6조(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)	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 및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협상단이 구성될 경우 비용 또는 사무를 지원할 수 있음(제7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6조(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¹⁾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(이하 “국민관심행사등”)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
- 「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」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-14호)에서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를 ‘동·하계 올림픽과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, 동·하계아시아경기대회, 야구WBC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,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가 주관하는 경기,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’으로 규정하고 있음

[표 1] 「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」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-14호)의 내용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(이하 “국민관심행사등”이라고 한다)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국민관심행사등”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를 의미한다.
제3조(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)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. 1.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·하계 올림픽과 FIFA(국제축구연맹)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. 2.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·하계아시아경기대회, 야구WBC(월드베이스볼클래식)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,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(아시아축구연맹) 및 EAFF(동아시아축구연맹)가 주관하는 경기(월드컵축구 예선포함),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(친선경기 포함)으로 한다.
제4조(재검토기한) 방송통신위원회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) 제76조(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)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(이하 “국민관심행사등”이라고 한다)를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(이하 “중계방송권자등”이라 한다)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

- 개정안은 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등 및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협상단이 구성될 경우 비용 또는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동협상단 구성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 및 사무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, 향후 구성되는 공동협상단 구성의 횟수 및 규모,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